

원법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자치구청장 및 소속행정 기관에 위임하기 위한 사항임.

세부사항

○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위임(산업국:농수산유통과)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규정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업무와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정수업무가 농림부 장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단순 변경내용임.
다만 가락동,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 농수산물공사에도 동시위임토록 하여 실질적인 농산물 원산지표시조사 및 시장도매법인 등 수입업자에 대한 강제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도 고려.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무위임(환경국:대기과)

- 최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 및 건물의 밀폐화등으로 인한 새집증후군과 같은 실내오염 관련 질병 등 환경상 위해를 예방코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 5. 30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의 기준준수 확인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과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교육,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의 사용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업무이양되어 시장권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위와관련 관리대상 시설물이 당초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2개(290개소)시설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등 17개(1,085개소)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으로 관리시설물이 확대되었으며, 관리대상 오염물도 미세먼지, 포름알데이드 등 7개항목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10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등 관리대상시설이 다원화되고 기존의 대기·수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관리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시 차원의 직접관리보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역주민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음.

○ 가로수·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 녹지에 관한 사무위임(환경국:조경과)

- 가로수·녹지대설치및관리의권한이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내용을 도로법상 규정하는 녹지대와 도시공원법상 규정하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임규정을 분리하여 자치구청장에 위임하고
- 세종로, 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소장에게,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녹지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안전본부장에게 세분하여 분리 위임함으로써 그동안 자치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관리상에 책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위임규정을 자치구청장 및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9월 7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산업국장 최령)

가. 제정이유

-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개선하고자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며,
- 기업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한 기업민원 전담기구의 설치 등 기업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입지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공급, 마케팅의 지원 및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 시장은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전략산업 해당기업을 선정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고, 마케팅 또는 기술개발 등 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시장은 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전략산업 해당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고자 시, 자치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시 소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산업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관 등과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기술지도사업과 산업기술의 개발·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장은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설습에 필요한 비용과 산학연 협력사업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세무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시장은 기업민원을 해결하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 소속 공

무원에 대하여 민원해결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 남 중)

□ 총괄부분

- 과거에 우리 나라는 노동력과 자본 등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1995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9년동안 마의 1만불 경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 현재 전환기 속의 우리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넛 그랫커(nut-cracker) 딜레마, 혁신이 미흡한 경제구조, 경제주체간 대립의 심화 등의 도전 속에서 혁신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경제하거나 쇠퇴하느냐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 지방의 신산업 성장동력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조정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주요 내용으로
 -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서울의 경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산업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한 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도모와 시정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확대, 기업민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민원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임.

□ 세부사항

-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안 제6조~제10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기업입지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공급, 마케팅의 지원 및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기반조성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요인이라 하겠음.
 - 그러나, 전략산업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의와 기술 및 자금지원 대상의 적합성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 및 국내 절대우위인 산업이 아니라 21세기 서울의 경쟁도시인 동경·북경·상해·홍콩·싱가포르 등에 비교우위 산업을 특화하여 '골목대장'식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특히, 국내 타 산업과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 강구가 요망됨.
-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개발(안 제11조~안 제14조)
 -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등 규정에, 도시계획관리한시제한 등의 완화규정은 도시계획조례등과 시세 감면등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 실질적인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음.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안 제15조~제20조)
 - 본 조례의 핵심분야로써 시·자치구·기업·기업지원기관 및 시 소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인력 양성 등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출연금 출연과 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4년 추경예산에 3억과 2005년 예산에 무려 1천억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출연금 출연대상과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역경제발전효과, 고용창출효과 기준 및 적합

성여부와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겠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후관리 대책 장구가 필요하다 하겠음.

- 기업민원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민원 해결(안 제21조~제23조)
 -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구(현재:BIZ119)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민원처리지원을 실질적인 원스톱 구축체계를 마련한 점에 대하여 긍정적이라 하겠음.
- 위와 같은 서울지역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사업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친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산업국(농수산유통과) 사무명단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업 국 (농수산 유통과)	9.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6항 ○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구청장

별표의 환경국(대기과) 사무명단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국 (대 기 과)	8.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확인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 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다. 과태료처분 통지등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동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구청장